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에 인력 2명(7급 2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11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1. 00. ~ 11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⑬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환경과학원의 근로자 안전·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(7급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별표 8 중 총계 “391”을 “39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91”을 “393”으로 하며,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보건주사보·환경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“3”을 “5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~ ⑫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7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~ ⑫ (현행과 같음) <u>⑬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환경과학원의 근로자 안전·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(7급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</u>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8]

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(제37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391</u>	<u>393</u>	+2
일반직 계	<u>391</u>	<u>393</u>	+2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환경주사보 · 시설주사보 또는 해양 수산주사보	<u>3</u>	<u>5</u>	+2
·	·	·	
·	·	·	